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-1호

「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4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가. 상주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
- 나.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상주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제고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연구단체 구성, 등록 및 등록취소 (안 제3조 ~ 제5조)
 -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,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 가입
- 다.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기능 및 회의 (안 제6조 ~ 제8조)
- 라. 연구단체 지원 및 공동참여 (안 제9조 ~ 제10조)
 - 연구단체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8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: pj5725@korea.kr
- 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- 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